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9 선고 2019가단5223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 주식회사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6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,856,574원 및 그중 18,25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8. 20.부터, 12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5. 12.부터 각 2020. 4. 3.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청구원인 4항의 '15,500,000원'은 '18,500,000원'의 오타로 보인다).

2. 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춘수

별지